

## ◎ 통계청 고시 제 2023 -199호

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(협의)을 고시합니다.

2023 년 5 월 30일

통 계 청 장

1. 통계의 명칭 : 논산시청년통계
2.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: 충청남도 논산시
3. 통계작성승인(협의)번호 [작성승인(협의)일] : 제696004호 [2017.11.29.]
4.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: 2023.5.22.
5.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: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변경사유
작성대상	통계작성 기준시점 논산시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 (만15~39세)	통계작성 기준시점 논산시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 (만18~44세)	- 아동복지통계(작성예정)와 연령 구간 중복으로 작성대상 변경
작성기준시점	2020.12.31	작성기준년도 5.31	* 사회복지정보시스템 개편에 따른 행정자료 재입수
작성기간	2021.2월 ~ 12월	작성기준년도 6월 ~ 11월	*자료수집 및 작성기간 현행화